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
2024. 2. 19(월)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4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6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가. 총 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1회추경 (안)	비 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	736,796,866	735,718,162	734,975,982	742,180	1,078,704	
일 반 회 계		711,333,570	710,254,866	709,512,686	742,180	1,078,704	
특 별 회 계		25,463,296	25,463,296	25,463,296	0	0	
	의료급여기금	585,000	585,000	585,000			
	주 차 장	24,878,296	24,878,296	24,878,296			

나. 일반회계

-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711,333	710,255	709,513	742	1,078	
자체재원	156,243	156,243	156,243	-	0	
지방세	114,629	114,629	114,629	-	-	
세외수입	41,614	41,614	41,614	-	-	
의존재원	476,875	475,797	475,055	742	1,078	
지방교부세	14,994	14,994	14,994	-	-	
조정교부금등	132,875	132,875	132,875	-	-	
보조금	329,006	327,928	327,186	742	1,078	국비 153 시비 925
보전수입등	78,215	78,215	78,215	0	0	
순세계잉여금	78,215	78,215	78,215	-	-	

-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계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711,333	710,255	709,513	742	1,078	
정책사업	581,942	580,898	580,156	742	1,044	
재무활동	1,688	1,654	1,654		34	기금 전출금
행정운영경비	127,703	127,703	127,703			

4. 부서별 총괄현황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기정액		1회추경(안)	
	구성비	구성비	구성비	증감률	증감률	
총계	736,796,866	100.00 %	735,718,162	100.00 %	1,078,704	0.15 %
민원감사담당관	246,204	0.03 %	246,204	0.03 %	0	0.00 %
소통담당관	3,302,921	0.45 %	3,302,921	0.45 %	0	0.00 %
행정안전국	156,497,646	21.24 %	155,083,692	21.08 %	1,413,954	0.91 %
행정지원과	119,765,377	16.25 %	119,765,377	16.28 %	0	0.00 %
자치행정과	12,150,176	1.65 %	11,187,483	1.52 %	962,693	8.61 %
교육지원과	20,561,696	2.79 %	20,110,435	2.73 %	451,261	2.24 %
주민안전과	3,190,726	0.43 %	3,190,726	0.43 %	0	0.00 %
민원여권과	829,671	0.11 %	829,671	0.11 %	0	0.00 %
기획경제국	33,400,019	4.53 %	37,150,745	5.05 %	△3,750,726	△10.10 %
기획예산과	17,035,178	2.31 %	20,961,104	2.85 %	△3,925,926	△18.73 %
지역경제과	8,152,456	1.11 %	7,977,256	1.08 %	175,200	2.20 %
일자리청년과	6,628,085	0.90 %	6,628,085	0.90 %	0	0.00 %
재무과	504,790	0.07 %	504,790	0.07 %	0	0.00 %
세무1과	452,608	0.06 %	452,608	0.06 %	0	0.00 %
세무2과	626,902	0.09 %	626,902	0.09 %	0	0.00 %
복지가족국	382,553,160	51.92 %	380,617,774	51.73 %	1,935,386	0.51 %
복지정책과	12,140,356	1.65 %	12,140,356	1.65 %	0	0.00 %
복지지원과	95,517,103	12.96 %	95,517,103	12.98 %	0	0.00 %
어르신장애인과	173,587,472	23.56 %	172,341,472	23.42 %	1,246,000	0.72 %
가족정책과	84,327,445	11.45 %	83,638,059	11.37 %	689,386	0.82 %
아동청소년과	16,980,784	2.30 %	16,980,784	2.31 %	0	0.00 %
푸른미래도시국	21,228,486	2.88 %	20,576,386	2.80 %	652,100	3.17 %
주택과	1,514,842	0.21 %	1,514,842	0.21 %	0	0.00 %
도시계획과	292,565	0.04 %	292,565	0.04 %	0	0.00 %
주거정비과	2,374,109	0.32 %	1,722,009	0.23 %	652,100	37.87 %
공원녹지과	16,575,290	2.25 %	16,575,290	2.25 %	0	0.00 %
건축과	471,680	0.06 %	471,680	0.06 %	0	0.00 %
문화환경국	74,226,487	10.07 %	74,010,785	10.06 %	215,702	0.29 %
문화체육과	26,453,542	3.59 %	26,237,840	3.57 %	215,702	0.82 %
청소행정과	45,057,363	6.12 %	45,057,363	6.12 %	0	0.00 %
환경과	2,264,144	0.31 %	2,264,144	0.31 %	0	0.00 %
부동산정보과	451,438	0.06 %	451,438	0.06 %	0	0.00 %
교통건설국	42,067,999	5.71 %	41,557,999	5.65 %	510,000	1.23 %
교통행정과	1,901,906	0.26 %	1,901,906	0.26 %	0	0.00 %
주차관리과	24,878,296	3.38 %	24,878,296	3.38 %	0	0.00 %
건설행정과	279,165	0.04 %	279,165	0.04 %	0	0.00 %
도로과	8,004,325	1.09 %	8,004,325	1.09 %	0	0.00 %
치수과	7,004,307	0.95 %	6,494,307	0.88 %	510,000	7.85 %
보건소	18,809,844	2.55 %	18,707,556	2.54 %	102,288	0.55 %
보건정책과	2,956,150	0.40 %	2,956,150	0.40 %	0	0.00 %
건강증진과	12,523,279	1.70 %	12,420,991	1.69 %	102,288	0.82 %
의약과	2,545,728	0.35 %	2,545,728	0.35 %	0	0.00 %
위생과	784,687	0.11 %	784,687	0.11 %	0	0.00 %
의회사무국	4,464,100	0.61 %	4,464,100	0.61 %	0	0.00 %

나. 보건소 주요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주요내용	최종예산액	기정액	1차 추경(안)
1	건강증진과	AI-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	-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으로 AI-IoT관리서비스 공모 선정	102,288	0	102,288

5. 검토의견

- 보건소 세출예산은 예산서(안) 7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 예산에서 총 1억 228만 8천원이 증액 되었음.
- 주요 편성 내역은
 - (건강증진과) 보건복지부 AI-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에 우리구가 2023.11.16.에 선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비 신규 1억 228만 8천원 증액
- 보건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국·시·구비 매칭비를 신규 증액하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4. 1. 12.] [법률 제19334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